

학 회 정 관

개정정관

(2020.04.02.문체부 승인)

Tel: (02) 877-1815 Mobile: 010-9824-1815
#402, Cyber Building 2, Hanyang Cyber University
220, Wangsimni-ro, Seongdong-gu, Seoul 04763, Korea
<http://www.publicdesign.or.kr>
publicdesign@naver.com



한국공공디자인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공공디자인학회"라 칭하며(이하 "학회") 영문으로는 "KSPD, KOREAN SOCIETY OF PUBLIC DESIGN"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학회는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제반 학술 및 연구, 교육활동 등을 수행하고, 관민산학간 협력을 통하여 한국의 공공디자인 발전과 국가 및 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지역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 (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공공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전문학술지 발간
2. 연구성과 및 프로젝트 등에 대한 연구보고서, 교육·홍보 자료, 관련도서의 발간
3. 학술대회, 세미나, 포럼 및 강연회, 답사회, 전시회 등의 주최, 주관 또는 운영
4. 국내외 관계기관 및 기업, 단체와의 학술 및 교육, 자문, 컨설팅, 기획 등 협력사업
5. 공공디자인의 품격 제고 및 확산을 위한 평가 및 심의, 포상 및 인증 업무
6. 공공디자인에 관한 학술 및 디자인, 기술, 실험 및 시범제작·설치 등 용역 및 사업, 연구소 운영
7. 회원 상호간의 권익옹호와 친목도모에 관한 사업
8.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구성)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 학생회원, 기업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6 조 (자격)

학회의 구성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
 - ① 대학에서 공공디자인 관련분야를 졸업한 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서, 공공디자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②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연구 및 실무경험이 4년 이상인 자

- ③ 기타 상임이사회가 이와 같은 기준에 상응된다고 인정하는 자
- 2. 평생회원 : 정회원 자격자 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 3. 명예회원 : 학식과 덕망이 높고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국내외 인사
- 4. 학생회원은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회원 1인의 추천을 받아 입회한다.
 - ① 대학에서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관련학과에 재학중인 자
 - ② 기타 상임이사회가 위와 같은 기준에 상응된다고 인정하는 자
- 5. 기업회원 :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 전문기업으로 학회발전에 기여하는 기업

제 7 조 (입회 및 자격 심사)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본 학회의 사무국에 제출하고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다음의 호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 2. 학회 사업의 결과에 대한 공유권
- 3. 학회가 시행하는 사업의 참여권
- 4. 전문위원회 활동의 참여권
- 5. 학회가 요청받은 자문 및 심사, 평가위원 등의 피추천권
- 6. 정회원은 회비의 납부 등 모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7. 명예회원, 학생회원, 기업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8. 모든 회원은 학회 발전을 위해 특별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 3.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 (단, 명예회원은 제9조 3항 회비납부의 의무를 면한다.)
- 4. 회비의 종류
 - ① 입회비
 - ② 정회원 회비
 - ③ 학생회원 회비
 - ④ 평생회원 회비
 - ⑤ 기업회원 회비
 - ⑥ 특별회비

제 10 조 (탈퇴)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사무국에 탈퇴의향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탈퇴효력은 제출 후 10일 후에 발생한다. 회원이 신병, 해외출국 등의 사

유로 1년 이상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국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휴회할 수 있으며, 휴회 기간 중에는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면제된다.

제 11 조 (회원의 상벌)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또한 본 학회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회계의 부정, 임원 간의 분쟁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회원 제명, 회원 자격정지, 임원 해임, 경고 등으로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2 조 (임원의 구성)

본 학회에는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명예회장과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7인 이내
3. 상임이사 7인 이내
4. 이 사 60인 이내
5. 감 사 2인

제 13 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1. 회장은 회장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위원회는 감사,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 회장선출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재적 구성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구성하며 의결은 출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3. 회장선출위원회의 임기는 회장 선출 후 총회의 인준 시까지 한시 임기로 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5. 부회장, 상임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직무는 회장이 배정한다.
5.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4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상임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 15 조 (임원의 자격제한)

1. 상임이사는 상임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상임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상임이사와 감사 간에 제1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하여

야 한다.

제 16 조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 이사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의 임무를 대행하되 60일 이내에 회장선출위원회를 거쳐 회장을 재선출 한다.
3.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통하여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및 상임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이사는 전문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의 직무를 배정받아 학회의 사업에 참여한다.

제 17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상임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상임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상임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상임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8 조 (고문)

1. 본 학회에는 전임회장 및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에서 공적이 현저한 자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고문은 상임이사회의 추대와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 19 조 (명예이사)

1. 본 학회에는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에서 공적이 현저한 자를 명예이사로 추대할 수 있다.
2. 제1항의 명예이사는 상임이사회의 추대와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3. 본 학회에 명예이사는 이사의 정원 밖으로 하고, 표결권이 없으며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4. 명예이사는 본 학회의 목적을 위한 사안에 따라 건의 및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 20 조 (명예회장)

전 회장으로 공적이 현저한 분을 총회에서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21 조 (구성)

총회는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이다.

제 22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의 선출에 관한 인준, 감사와 부회장, 상임이사의 선출에 관한 의결, 임원의 퇴임 및 해임에 관한 인준
2. 정관변경 및 학회의 해산에 관한 승인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적정여부 승인
4.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6.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의결을 요청한 중요사항

제 23 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의 요구 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통지 가능한 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 24조 (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상임이사회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제 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정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상임이사회 과반수 또는 정회원 5분의 1이상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정회원의 소집시 위임한 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상임이사회 상임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5 조 (총회의 구성 및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단, 위임한 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총회의 의결사항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정관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38조 및 제40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6 조 (총회 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상임이사회

제 27 조 (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직무)

1. 상임이사회는 본 학회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 상임이사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총회 의결사항의 실행
 - ② 총회의 개최, 학술대회 및 세미나, 전시회, 교육, 홍보 등 각종 행사 운영
 - ③ 회비의 설정 및 변경, 징수, 예산편성과 결산업무 심의 및 의결
 - ④ 회원 가입 및 회원 자격변경, 회원 포상 및 징계 심의 및 의결
 - ⑤ 학회지, 학술보고서, 도서, 각종 간행물 등의 발간 심의 및 수행
 - ⑥ 각종 학회 용역 및 사업의 추진과 관리
 - ⑦ 정관 개정, 업무규정과 지침의 제정 및 개정 심의, 의결
 - ⑧ 자산의 관리 및 지회의 운영 관리
 - ⑨ 기타 학회 통상업무의 진행 및 상임이사회 업무 내용 조정
3.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되, 1년에 반드시 2회 이상을 개최하여야 한다.

제 28 조 (의결정족수)

1. 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은 회의록에 기록 보관한다.

제 6 장 전문위원회

제 29 조 (전문위원회의 설치)

1. 학회 정관에 규정한 사업목적을 전문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전문위원회의 운영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전문위원회 별로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을 둘 수 있다.
4.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30 조 (재산의 구분)

1. 이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① 학회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②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 ③ 보통재산 중 상임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기본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요청시 보고하여야 한다.

4. 이 학회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별첨1)과 같다.

제 31 조 (재산의 관리)

1.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부채납 할 때에는 미리 상임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학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학회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제 32 조 (재산의 구성)

본 학회의 재산은 다음 항목으로써 구성된다.

1. 회원이 납부한 입회비 및 회비
2. 보조금
3. 찬조금과 찬조한 물건
4. 재산에서 생긴 수익금
5. 기타 잡수입금
6. 학술 및 설계·디자인 용역, 각종 사업 등의 수입금
7. 교육행사, 저작물 등의 수입금

제 33 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또는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 34 조 (회계년도 구분 등)

1.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학회의 예산과 결산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5 조 (회계감사)

1. 회계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고, 정기감사는 년 2회 이상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2. 수시감사는 회계업무상 하자가 발견되었거나 본 학회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임이사회에 통보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다.

제 36 조 (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학회 운영상 필요한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사무부서

제 37 조 (사무국)

1. 본 학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

3. 사무국장 및 직원은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9 장 보칙

제 38 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39 조 (해산학회의 재산귀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학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40 조 (정관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에서 2분의 1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1 조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

본 학회의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년도 종료 후 총회에 보고하고, 주무관청의 요청이 있을시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 등 필요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장 부칙

제 1 조 (시행)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정관개정 허가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정관개정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차기 회장의 임기 개시일부터로 한다.